##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206

발의연월일: 2025. 2. 17.

발 의 자: 강준현·김남근·김현정

문진석 · 서미화 · 김문수

박정현 • 이재관 • 서영석

이광희 · 송재봉 · 민병덕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 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 ·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 나.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6조제1항).

법률 제 호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2회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무정지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2회 이상"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과태료처분을"로 한다.

제136조제1항 전단 중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보험 설계사·보험대리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내사무소"·"보 험대리점""을 ""국내사무소"·"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설계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해 조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	4		
을 <u>2회 이상</u> 받은 경우	<u>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u>		
	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업		
	<u>무정지 처분을</u>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			
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5		
<u>2회 이상</u>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의		
	행위로 인하여 다시 과태료		
	<u> 처분을</u>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	제136조(준용) ① 국내사무소・보		

현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 하여는 제133조 및 제1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u>"국내사무소"·"보험</u> 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② · ③ (생 략)

<u>험설계사·보험대리점</u>
<u>"국내</u>
사무소"·"보험설계사"·"보험
대리점"
② · ③ (현행과 같음)